
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9. 6. 28.>

# 농지전용 [ ] 허가 [ ] 변경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시·군·구 시·도 농림축산식품부
			10일 20일 30일

신 청 인	성명 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주소	
	우 편 물 수 령 지	(전화번호 : )

전용하려는 농 지	소재지	번지 외 필지			
	구 분	계 ( m <sup>2</sup> )	답	전	농지개량시설부지
	농업진흥구역				
	농업보호구역				
	농업진흥지역 밖				
	계				

사업예정부지 총 면적(비농지 포함)	m <sup>2</sup> (농업진흥지역) m <sup>2</sup>
---------------------	--

사업기간	착공예정일 : 년 월 일	준공예정일 : 년 월 일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전용목적	
------	--

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	[ ]일시납부 [ ]분할납부 ※ 해당란에 √ 표시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(변경허가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서명 또는 인

**농림축산식품부장관**  
**시 · 도 지 사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귀하  
**시장 · 군수 · 자치구구청장**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, 시설물의 배치도, 소요자금 조달방안, 시설물관리·운영계획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및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</li> <li>2.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용승낙서·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</li> <li>3.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·임야도등본 및 지형도</li> <li>4.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,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</li> <li>5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(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6.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용허가자의 명의를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7.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(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	수수료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름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2. 지적도·임야도 및 지형도</li> </ol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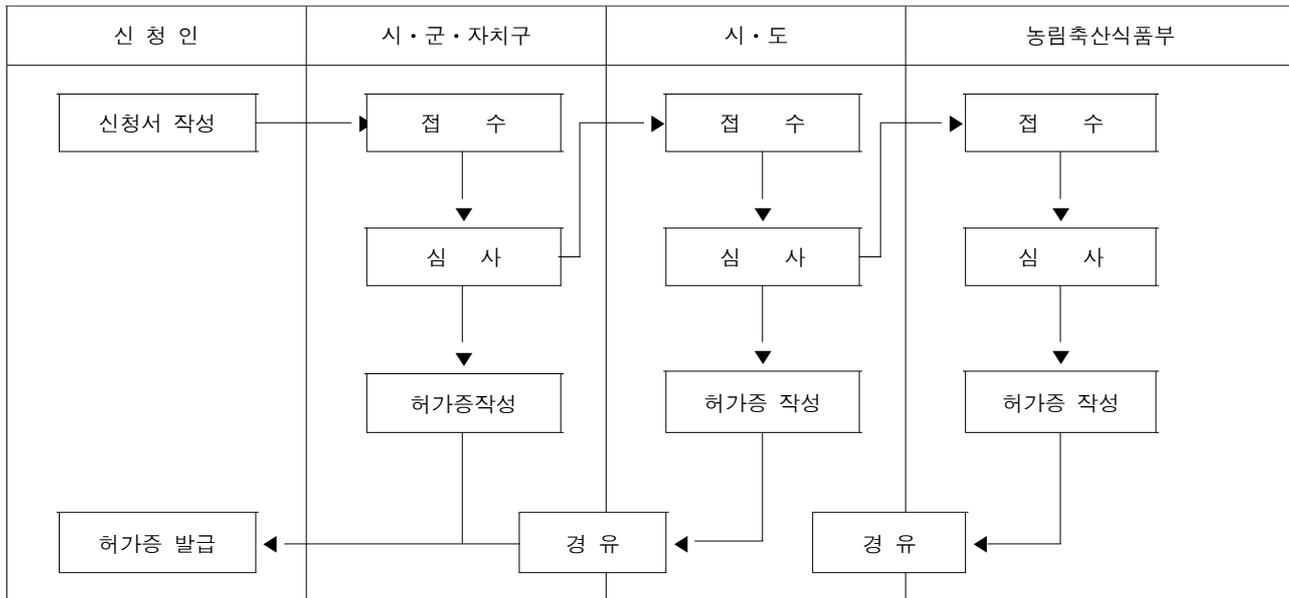
※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. 210mm×297mm[백상지 80g/ m<sup>2</sup>]

전용신청농지명세서

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 (㎡)	진흥지역 용도구분	전용 면적(㎡)	주재배 작물명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		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농지전용허가권한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1조)

구분	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	시·도지사	농림축산식품부장관
농업진흥지역 안 농지	3천㎡ 미만	3천㎡ 이상 ~ 3만㎡ 미만	3만㎡ 이상
농업진흥지역 밖 농지	3만㎡ 미만	3만㎡ 이상 ~ 30만㎡ 미만	30만㎡ 이상